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2019년 5월 8일

보/도/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법원 담당

발신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제목 :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문의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8644-5799, 02-365-5363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3가지 사건(2011년 국회 앞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 건, 2013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국정조사 약속이행 촉구시위 건, 2014년 세월호 추모행진 청와대 만인대회 건), 6명의 당사자가 재심 청구.
-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이 진행.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취지> 발언: 정준영(재심 청구 변호인단)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사건 소개 및 소감> 발언: 재심 청구인 당사자들
- <집시법 11조 개정 현황 및 문제> 발언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했던 <보도자료>에 청구인 당사자 발언을 추가한 것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당사자 발언과 함께 재심 청구 사건 및 청구 사유 요약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 1.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5,6,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 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해당 조항들을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 2.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은 기존의 원칙적 금지 내용을 유지하는 안들입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하는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 3.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를 이유로 이미 벌금형 등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여섯 명의 청구인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입니다.
- 4. 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집시법 11조 위반이 처음부터 무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통해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로 부당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후 재심 과정에서 사법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5. 이후 국회 집시법 11조 개정 대응 등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의 활동에 지속적 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190508_보도자료재심청구기자회견_사후배포용.hwp 26K